

# 요양보호사교육원 운영규정

□ 제정 : 2022. 6. 1.

## 제 1 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교육원은 수원과학대학교 요양보호사교육원(이하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전문적 지식, 기술, 인성을 겸비한 우수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위치) 본 교육원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8 수원과학대학교 내에 둔다.

## 제 2 장 조직

제4조(조직) ① 본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전담지도교수는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④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5조(강사) ① 교육원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강사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둔다.

② 강사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교직원) 교육원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7조(구성)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,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.

제8조(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

### 7-3-3 요양보호사교육원 운영규정

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9조(기능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
1. 교육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제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**제10조(의결)**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 4 장 교육과정 운영

**제11조(운영원칙)** 교육원은 교육의 전문성, 법과 윤리준수, 소통과 협력의 조직 운영을 기반으로 교육생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및 역량향상을 위해 노력한다.

**제12조(교육과정설치)** ① 교육과정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,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에는 표준과정, 자격소지자반 과정 등이 있으며, 과정별 교육내용과 시간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른다.

**제13조(지원자격)** 누구나 요양보호사 교육에 지원할 수 있다. 단, 교육과정별 요구되는 자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다.

**제14조(모집 및 선발)** ① 매 과정 개강 전에 홈페이지 등에 모집공고를 한다.

② 교육인원은 과정 당 40명이며, 학습자는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5조(교육평가)** 교육과정이 끝나면 교육내용 및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한다.

**제16조(교육비 및 강사료)** ① 본 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.

③ 교육과정별 학습비와 강사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다.

**제17조(수료)** 각 교육과정별 교육수료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정한다.

## 제 5 장 회계

제18조(회계년도) 본 교육원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19조(예산편성) 본 교육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

제20조(수입원) 본 교육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총당한다.

1. 교육생의 교육비
2. 본교 보조금 및 기타 보조금
3. 훈련지원금(위탁훈련 시)
4. 그 밖의 수입

제21조(예산 및 결산) 본원의 회계업무는 본 교 예산회계업무 규정에 따른다.

## 제 6 장 보칙

제22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